

시보는 읍옹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9호 2021. 12. 8.(수)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1-477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1-478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1-4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1-48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1-2226호 도로지정 공고	16
광양시 공고 제2021-2236호 도로지정 공고	18
광양시 공고 제2021-2243호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공고 제2021-2272호 광양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6
광양시 공고 제2021-2274호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광양시 공고 제2021-2275호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
광양시 공고 제2021-2276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9
광양시 공고 제2021-2277호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5

회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곡길 103(황길동)외 7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8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070-9	전라남도 광양시 황곡길 103 (황길동)	20211208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군동 58-9	전라남도 광양시 군장길 312 (중군동)	202112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0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5길 72	20211208	20211201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454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1길 14	202112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96-8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21 (중동)	20211208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41-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내금길 266-18	2021120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50-7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길 13-5 (마동)	20211208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8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099-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회두2길 73-18	20211208	20211124	옛 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12. 8.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용장길 (1차종속도로)	길	성황동	성황동 884	성황동 640-1	도면 참조	269	3	20	71-1	71-28	마을지명에서 인용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
	성명	광양시장(안전총괄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86
	면적	1.5㎡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점용기간		2021. 12. 7. ~ 영구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 2021-48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계곡길 142-19	2021. 12. 8.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봉강면 명암길 6		
3	전남 광양시 옥룡면 양산길 50		
4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암길 10		
5	전남 광양시 옥곡면 큰골1길 5-3		
6	전남 광양시 옥곡면 수평길 237		
7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시내길 50		
8	전남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1길 44		
9	전남 광양시 도촌길 7-32 (광영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8.

광 양 시 장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계곡길	142-19	광양읍 우산리 1007	▶ 건물철거 (건축과-11326(2021. 3. 22.)호에 의거)	2021. 3. 22.	2021. 12. 8.

현황도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명암길	6	봉강면 석사리 122-6	▶ 건물철거 (건축과-5301(2021. 2. 5.)호에 의거)	2021. 2. 5.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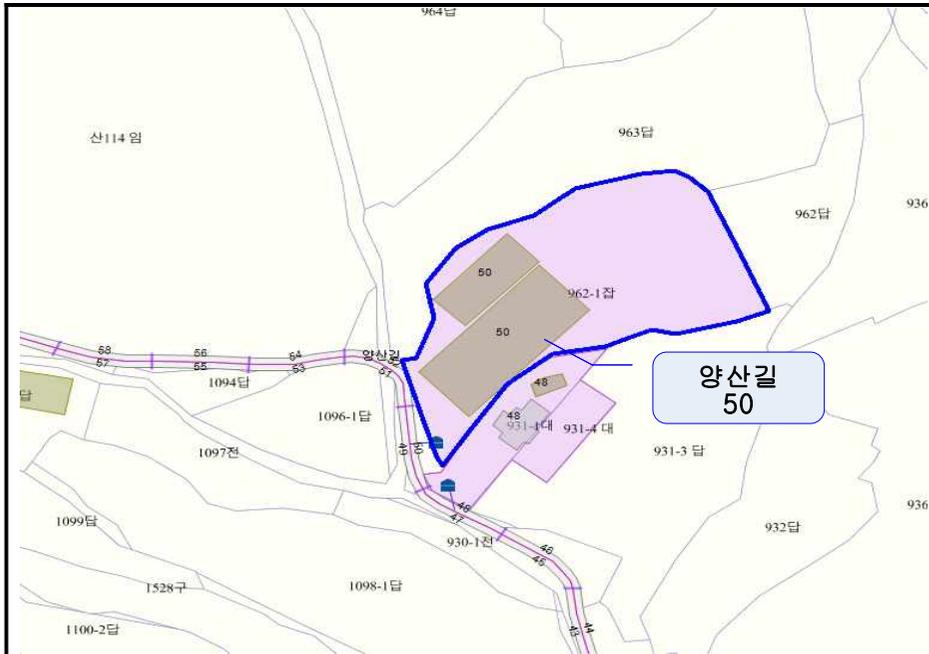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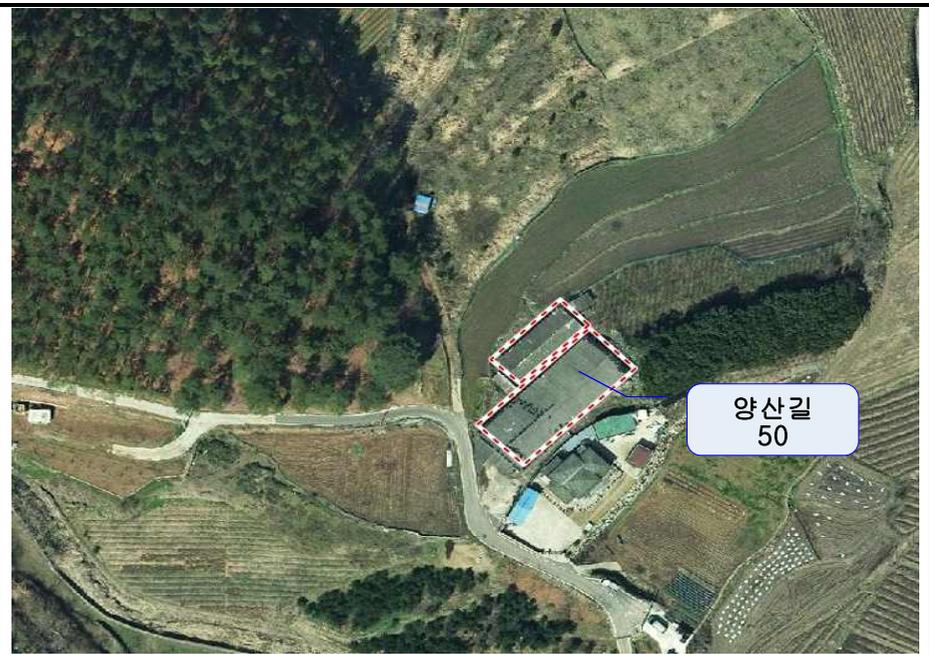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양산길	50	옥룡면 추산리 962-1	▶ 건물철거 (건축과-13359(2021. 4. 5.)호에 의거)	2021. 4. 5.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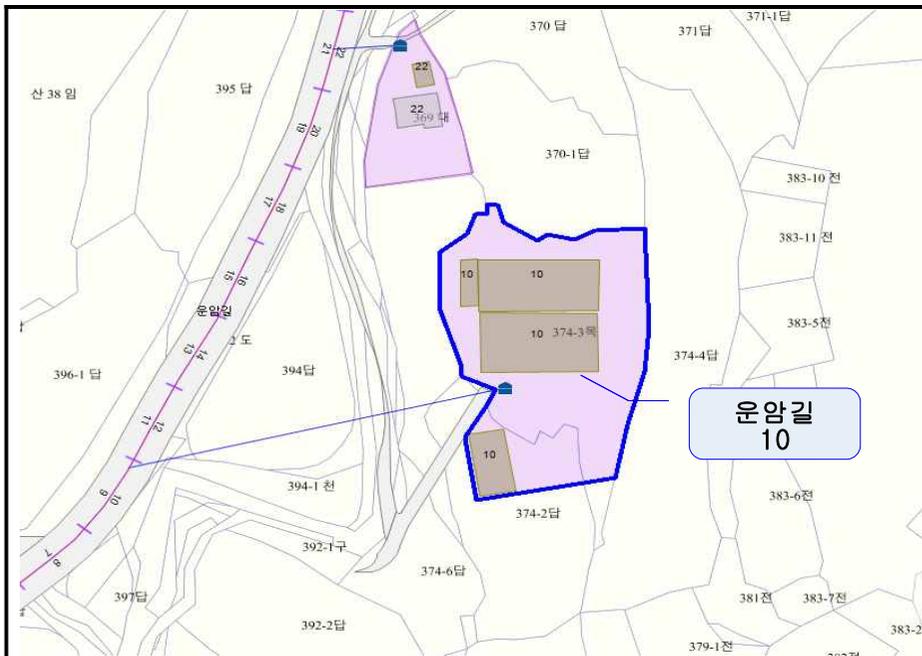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운암길	10	옥룡면 추산리 374-3	▶ 건물철거 (건축과-48726(2020. 12. 30.)호에 의거)	2020. 12. 30.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큰골1길	5-3	옥곡면 신금리 1330-1	▶ 건물철거 (건축과-46272(2021. 11. 23.)호에 의거)	2021. 11. 23.	2021. 12. 8.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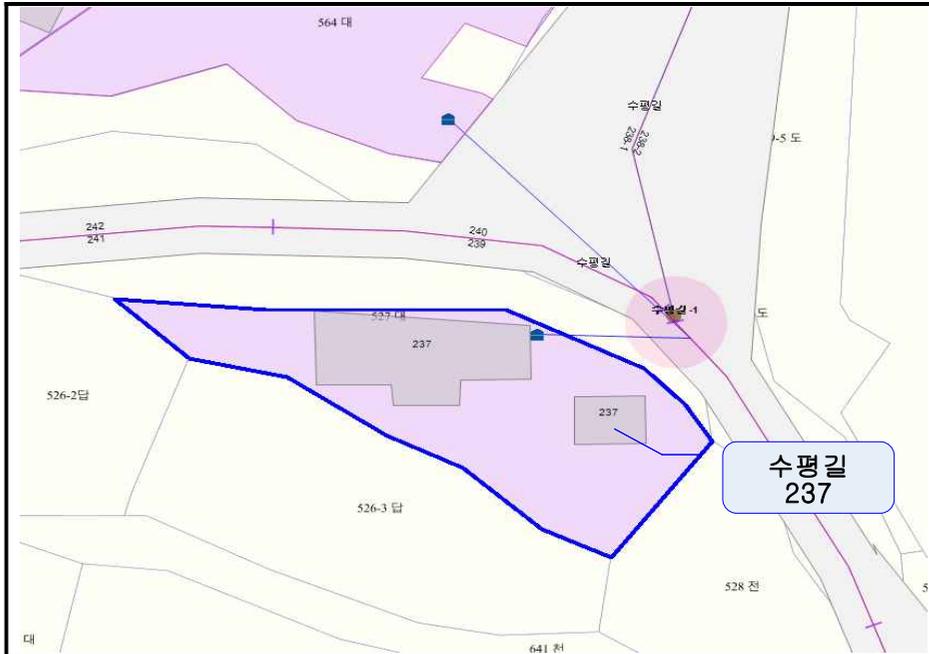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수평길	237	옥곡면 수평리 527	▶ 건물철거 (건축과-26962(2021. 7. 6.)호에 의거)	2021. 7. 6.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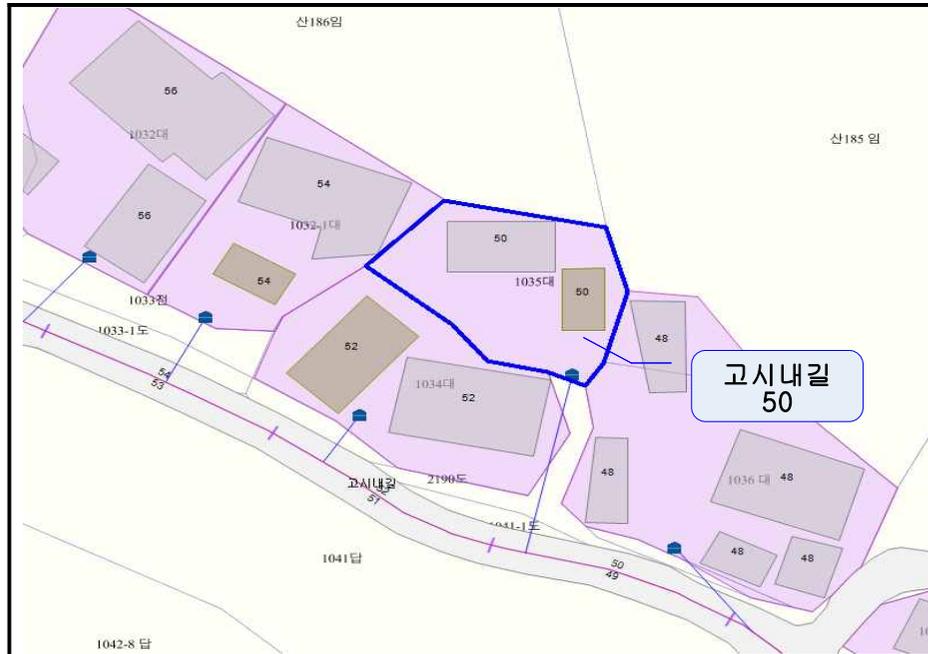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고시내길	50	다압면 고사리 1035	▶ 건물철거 (건축과-7526(2021. 2. 23.)호에 의거)	2021. 2. 23.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토끼재1길	44	다압면 신원리 1122	▶ 건물철거 (건축물대장 없음)	2021. 11. 30. (확인일)	2021. 12. 8.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도촌길	7-32	광영동 838-13	▶ 건물철거 (건축과-43805(2021. 11. 8.)호에 의거)	2021. 11. 8.	2021. 12. 8.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광양시 공고 제2021-222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 12. 8.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1. 12. 8. ~ 2021. 12. 23.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49-1번지, 550번지	김봉호	31.5m	3.0m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49-1번지	8.0m ²	동의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50번지	43.0m ²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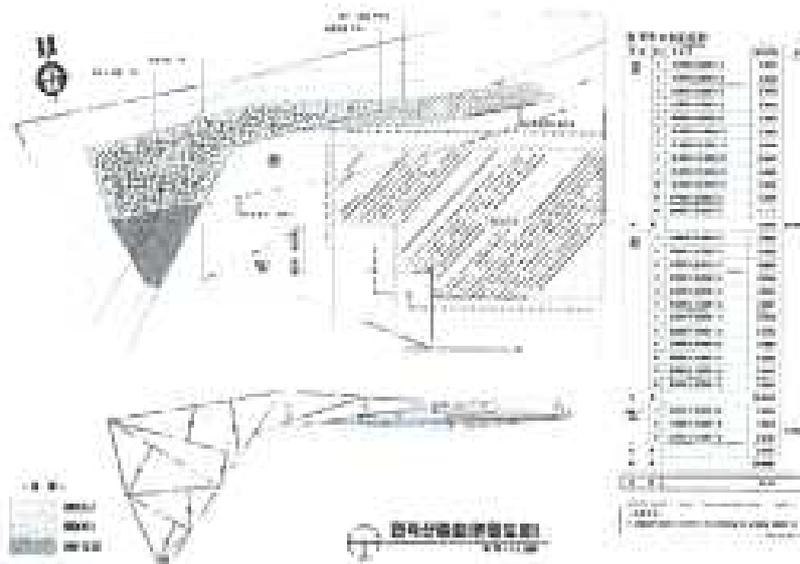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속 치 <임 회>



현황도

속 치 [1/600, [1/1,200

광양시 공고 제2021-223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 12. 8.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1. 12. 8. ~ 2021. 12. 23.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63번지	박연심	9.7m	6.0m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63번지	17.8㎡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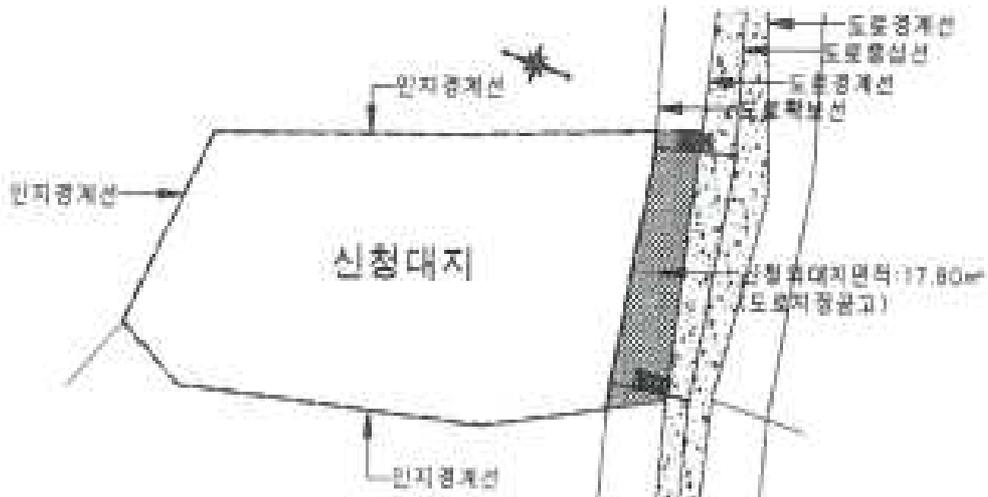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1/600

1/1,200

광양시 공고 제2021-2243호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양시장

1. **조례안명** :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이원화 되어 행정과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유사하여 시민들이 두 시설을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사무소로 변경하여 읍면동 청사 명칭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동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제명에 사용되는 주민센터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구 분	제 명	비 고
현 행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변 경	광양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본문 및 별표 개정)

- 제1조, 제2조 및 별표에 사용된 “동주민센터” 를 “동사무소” 로 변경
- 2021. 10. 12. 골약동 주민센터가 다른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별표에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

구 분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현 행	골약동주민센터	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	
개정안	골약동사무소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	

○ (타 자치법규 개정)

- 본 조례 개정시 부칙으로 주민센터 용어가 있는 기타 조례 일괄 개정
- 개정대상 자치법규 현황

연번	구분	자치법규명	비 고
1	조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조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례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12. 8. ~ 2021. 12. 29.(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전화 : 061-797-22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natio@korea.kr
- 팩 스 : 061-797-2579

붙임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를 “광양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를 “읍·면·동사무소” 로 한다.

제2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를 “읍·면·동사무소” 로 한다.

별표의 제목인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를 “광양시청,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로 하고, 기관명란 중 “골약동주민센터” 를 “골약동사무소” 로, “중마동주민센터” 를 “중마동사무소” 로, “광영동주민센터” 를 “광영동사무소” 로, “태인동주민센터” 를 “태인동사무소” 로, “금호동주민센터” 를 “금호동사무소” 로 하며, 소재지란 중 “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 을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②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③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u>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u>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u>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별표]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광 양 시 청</td><td>광양시 시청로 33(중동)</td></tr> <tr><td>광양읍사무소</td><td>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td></tr> <tr><td>봉강면사무소</td><td>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td></tr> <tr><td>옥룡면사무소</td><td>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td></tr> <tr><td>옥곡면사무소</td><td>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td></tr> <tr><td>진상면사무소</td><td>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td></tr> <tr><td>진월면사무소</td><td>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td></tr> <tr><td>다압면사무소</td><td>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td></tr> <tr><td>골약동주민센터</td><td>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td></tr> <tr><td>중마동주민센터</td><td>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td></tr> <tr><td>광영동주민센터</td><td>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td></tr> <tr><td>태인동주민센터</td><td>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td></tr> <tr><td>금호동주민센터</td><td>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광 양 시 청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읍사무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봉강면사무소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	옥룡면사무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	옥곡면사무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	진상면사무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진월면사무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다압면사무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	골약동주민센터	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	중마동주민센터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	광영동주민센터	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	태인동주민센터	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	금호동주민센터	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	<p>광양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u>관한</u> 조례</p> <p>제1조(목적) ----- ----- 읍· <u>면·동사무소</u>----- -----.</p> <p>제2조(위치) ----- <u>읍·면·동사무소</u>- -----.</p> <p>[별표]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생 략)</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골약동사무소</td><td>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td></tr> <tr><td>중마동사무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광영동사무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태인동사무소</td><td>(현행과 같음)</td></tr> <tr><td>금호동사무소</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생 략)	(현행과 같음)	골약동사무소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	중마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광영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태인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금호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기 관 명	소 재 지																																																										
광 양 시 청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읍사무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봉강면사무소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																																																										
옥룡면사무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																																																										
옥곡면사무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																																																										
진상면사무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진월면사무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다압면사무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																																																										
골약동주민센터	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																																																										
중마동주민센터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																																																										
광영동주민센터	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																																																										
태인동주민센터	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																																																										
금호동주민센터	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																																																										
기 관 명	소 재 지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골약동사무소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																																																										
중마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광영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태인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금호동사무소	(현행과 같음)																																																										

광양시 공고 제2021-2272호

광양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건축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및 정비·보완하고, 건축법에 위임내용 대비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개정 목적달성 및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3항제2호 나목의 강화조건인 가목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변경
4. 조례 개정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12. 8. ~ 12. 28.

6. 의견 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785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1층 건축과

(전화: 061-797-2888, FAX: 061-797-2590, 전자우편: dlagudgh12@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건축조례 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2호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0.8배이상, 낮은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을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광양시 공고 제2021 - 2274호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항이 신설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추가하여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으로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상호 협의하는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 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공무원 지원 관련 용어 추가(안 제2조)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추가(안 제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 제19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 제21조제1항제2호
 - 지원사항 추가: 이동 편의시설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 지원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지정 수행 가능: 경비의 출연·보조 가능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경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정비(안 제12조, 안 제13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7~15명, 위원장 부시장), 임명·위촉, 임기(2년), 회의소집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 규정 신설(안 제15조)
- 조항 일부 수정: 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8. ~ 2021. 12. 28.(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 2층 총무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728
 - 팩 스: 061-797-2579(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choisl@korea.kr
-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9조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를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로 하고, “할 수 있다” 를 “받을 수 있다” 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1호” 를 “제19조의2” 로 하고,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함)” 으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호” 를 “제21조제1항제2호” 로 하고,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을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을 삭제한다,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관련” 을 “편의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경비의 지급)” 을 “(경비 및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전문기관은 제9조제2항의 경비

및 출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 및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 을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을 “(협의회의 기능)” 으로 한다. 같은 조 중 “심의위원회” 를 “협의회” 로 하고,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를 추가하고, “조정” 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

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시와 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신설> 4. <신설>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p>제9조(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3. <신설> 4. <신설> <p>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p>	<p>제9조(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함) 2. -----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장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p>	<p>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3.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 및 지원결정
- 2.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주문 및 수리
- 3. 근로지원인의 고용·근무관리 등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제11조(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 1. -----
제43조-----

- 2. -----

-----편의지원-----

- 3. -----

-----편의지원-----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1. <삭 제>
- 2. <삭 제>
- 3. <삭 제>
- 4.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 및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전문기관은 제9조제2항의 경비 및 출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 및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는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⑥ <신 설>

⑦ <신 설>

⑧ <신 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신설>
5. <신설>

제15조 <신설>

제15조 (생략)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시와 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조례명 및 규칙 용어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0. 12. 22. 공포 / ' 21. 12. 23. 시행)

3. 주요내용

【조례 개정안】

- 제명 변경
 - (개정)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1/2에서 2/3로 상향(제11조)
- 법령 명칭에 맞게 조문 제목 변경(제7조)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용어로 통일
 - ‘행정정보’ ⇒ ‘정보’

【시행규칙 개정안】

- 제명 변경
 - (개정)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정보목록 공개 매체 변경(제4조)
 - 정보목록 공개 매체를 ‘광양시 홈페이지’ 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으로 변경
- 법령 명칭에 맞게 조문 제목 변경(제6조)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정보공개심의회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간사.서기 담당부서 변경(제13조)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용어로 통일
 - ‘행정정보’ ⇒ ‘정보’ , ‘공표’ ⇒ ‘공개’

4.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8. ~ 12.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8일까지 광양시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우 57785)

- 전 화: 061-797-2242

- 팩 스: 061-797-2576(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gyeongju51@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 공개접수창구”를 “정보공개 접수창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며, “비공개 행정정보”를 “비공개정보”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 중 과반수는”을 “위원의 3분의 2는”으로 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에 관하여”로, “외부인사중에서”를 “외부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3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심의외의 회의)”를 “(심의회의 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u> <u>행정정보공개 조례</u></p>	<p><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u> <u>정보공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등 집행기관의 <u>행정정보</u>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정보</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청구인"이란 <u>행정정보</u>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보</u>----- ----- -----.</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u>행정정보</u>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 -----<u>정보</u>----- -----.</p>
<p>제4조(시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행정정보</u>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p>	<p>제4조(시의 책무) ----- -----<u>정보</u>----- -----</p>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정보-----
-----정보-----
-----.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접수창구-----
-----.

제 2 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 2 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정보-----

-----비공개정보-----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②-----
-----정보-----

-----.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비공개정보

1. ~ 12. (현행과 같음)

③-----
-----정보-----
-----.

제9조(공개방법) ①정보-----

②정보-----

-----.

③-----
-----정보-----
-----.

④-----

정보-----
-----.

제10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 ① (생략)
-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④·⑤ (생략)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생략)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제10조(비용의 부담) -----

-----정보-----

-----,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
----- 외부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③·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회의 기능) -----

- .
1. -----
정보-----

 2. (현행과 같음)
 3. --- 정보공개제도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외의 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

-----, -----
-----.

제16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정보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을 “공개대상 정보목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를 “공개된 정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대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한다”를 “공개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을 “(공개주기 및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를 “정보”로 하며, “공표하되”를 “공개하되”로, “공표주기”를 “공개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표기관 및 부서)”를 “(공개기관 및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공표”를 “공개”로 하고, “공표매체”를 “공개매체”로, “공표기일”을 “공개기일”로, “공표매체관리부서”를 “공개매체 관리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공표기관”을 “공개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표방법의 변경)”을 “(공개방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부서”를 “공개부서”로, “공표방법”을 “공개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방법”을 “공개방법”으로, “공표시기”를 “공개시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표매체관리)”를 “(공개매체 관리)”로 하고, 본문 중 “공표매체관리”를 “공개매체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공표부서”를 “공개부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간사·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공표”를 “공개”로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광양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3호서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u></p>	<p><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u>」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처리부서”란 <u>행정정보</u>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보</u>----- ----- -----.</p>
<p>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p> <p>①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u>행정정보</u>에 대한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p>	<p>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p> <p>①-----<u>정보</u>----- ----- -----.</p>

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조례 제7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조례 제7조에 의한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시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4. -----
공개대상 정보목록
- 5. 공개된 정보나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 정보-----

-----.

② -----

-----공개한다.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 (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②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2. (생략)

②조례 제7조에 의한 행정정보를 공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에 적합한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기일 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제7조(공개주기 및 시기 등) ①-----

-----정보는-----

공개하되, -- 공개주기 -----

②-----“정보-----

-----”-----

제8조(공개기관 및 부서) ①정보의

공개는 -----

1. ~ 2. (현행과 같음)

②-----정보를

공개해야 -----

-- 공개 ----- 매체 -----

----- 공개기일 ----- 공개-----

-----공개매체 관리부서-----

③정보의 공개기관 -----

별표1과 같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 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관리)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제1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9조(공개방법의 변경) ①-----

----- 공개정보-----

----- 공개부서, -----

----- 공개방법-----

-----.

②----- 공개방법

----- 공개시기-----

-----.

제10조(공개매체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

- 1. ~ 2. (현행과 같음)

- 3. ----- : ----- 공개부서

제13조(간사 등) ① -----

-----,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기타) 정보의 공개에 -----

----- 정보-----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각종 공연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창달로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월액급여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2] 월액급여 변경(제5조제1항 제1호)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8. ~ 2021. 12.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문화예술과

(전화: 061-797-2715, FAX: 061-797-4184, 전자우편:

pw0825@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대표포함)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액급여

(단위: 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반 주 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158,000
	단 무 장	1,293,000
	반 주 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악 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액급여 (단위:원)			[별표 2] 월액급여 (단위: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38,000	시립합창단	지 휘 자	<u>2,878,000</u>
	단 무 장	1,419,000		단 무 장	<u>1,439,000</u>
	반 주 자	1,419,000		반 주 자	<u>1,439,000</u>
	악보기획담당	1,419,000		악보기획담당	<u>1,439,000</u>
	단 원	1,075,000		단 원	<u>1,091,000</u>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128,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u>2,158,000</u>
	단 무 장	1,275,000		단 무 장	<u>1,293,000</u>
	반 주 자	1,275,000		반 주 자	<u>1,293,000</u>
	성악지도담당	1,275,000		성악지도담당	<u>1,293,000</u>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38,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u>2,878,000</u>
	단 무 장	1,419,000		단 무 장	<u>1,439,000</u>
	악 장	1,419,000		악 장	<u>1,439,000</u>
	연희악장	1,419,000		연희악장	<u>1,439,000</u>
	악기기획담당	1,419,000		악기기획담당	<u>1,439,000</u>
	단 원	1,075,000		단 원	<u>1,091,000</u>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법령상 폐지된 용어 등을 재정비
3. 주요내용
 - 제3조(수상자의 결격사유)제1호 용어 정비
 - (현행)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개정)피성년후견인
 - 제11조(간사와 서기)제2항 용어 정비
 - (현행) 업무담당주사 → (개정)업무담당팀장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8. ~ 2021. 12.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785 /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문화예술과

(전화: 061-797-2715, FAX: 061-797-4184, 전자우편: pw0825@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규조례포함)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1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없다.</p> <p>1. <u>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u>를 받은 자</p> <p>2. · 3. (생략)</p> <p>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주사</u>가 된다.</p> <p>③ (생략)</p>	<p>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 ----- ----- -----.</p> <p>1. <u>피성년후견인</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담당팀장</u> ----.</p> <p>③ (현행과 같음)</p>